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

판 결

사 건	2022고정67 절도
피 고 인	노00 (600000-0000000), 000
	주거 안동시 00000 000-0, 000 0000
	등록기준지 안동시 000 000
검 사	김00(기소), 김00, 허00(공판)
변 호 인	변호사 민00(국선)
판 결 선 고	2023. 1. 11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22. 4. 16.경부터 2022. 4. 30.경 사이에 안동시 000 000 000에서 그곳 토지에 놓여있는 피해자 남00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름 불상량을 가져 가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.

2. 판단

가.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

증거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(수사기록 제11 내지 18쪽,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, 이00이 피고인이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)이다.

나. 그런데 이금숙은 이 법정에서 '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,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'고 진술하였다.

다.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거름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
판사 박00 _____